
『새정치민주연합·중견기업계 간담회』

중견기업계 건의자료

2015. 11. 23.

1

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

□ **현황 및 문제점**

- 중견기업특별법 시행('14.7)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, 성장걸림돌은 여전
- '13년 조사된 성장걸림돌 83개 중 '15년 현재 73개 존재

중소 →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현황

조사시기	지원 배제							규제 신규적용	합계
	조세	금융	R&D	인력	판로	기타	소계		
' 13년	21	7	10	7	10	8	63	20	83
' 15년	18	7	9	7	10	6	58	16	73

* 자료: 관계부처 합동,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, 2015. 6. 10

- (사례1) 민관 R&D 공동개발
 - 중소기업일 때 정부 및 공기업과 합작 투자로 R&D사업에 성공하여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국산화했으나,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국제경쟁입찰 진행
- (사례2) 일감몰아주기과세/기업소득환류세제
 - 당초 대기업의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도입을 추진했으나, 제도 도입과정에서 중견기업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
 -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
- (사례3) 외국인 고용허가제
 - 뿌리기업은 중견기업이라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에도 중견기업('14년, 27,141개 중 중견 125개) 배제

* 뿌리기업 : 주조·금형·소성가공·용접·표면처리·열처리기술 활용 사업 영위기업

□ **건의안**

-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부담 완화 필요

□ 현황

- 중소·중견 차등과세는 총 96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55개 지원에서 제외되고, 41개 지원 축소
 -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·확대하고 있으나 기업체감도는 낮음
-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인 ① 근로자 인력이탈, ② R&D투자 활성화에 대해 세제지원*을 건의했으나, 정부는 “수용불가” 입장
 - *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,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중견까지 확대, 신성장·원천기술 R&D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

□ 문제점

- 성장부담으로 인해 중견기업 8.9%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으며, 가장 큰 이유는 ‘조세혜택 단절’(63.5%)로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작용
 - * 회귀검토요인: 조세혜택 63.5%, 판로규제 11.7%, 금융지원 10.2%, 기술개발지원 9.5% 순(2014 중견기업 현황)
 - * 회귀 기업: ('11) 91개 → ('12) 50개 → ('13) 76개
- 또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은 중견(1.27%), 대기업(1.08%), 중소(0.36%) 순으로 중견기업이 가장 높음
- 중견기업 지원을 일부 확대하고 있으나 ‘규제성격의 과세*’ 대상에 대기업과 동일하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 - * 일감몰아주기·일감떼어주기 과세, 기업소득환류세제, 유가증권 할증평가 등

□ 건의안

- 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,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 완화
-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과세*제도에서 중견기업 제외

* 일감몰아주기 과세(중소기업간 거래는 제외), 일감떼어주기 과세(중소기업만 제외)

세제개편 건의안

구 분	현 행	'15년 세법개정안	건의안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(조특법 § 30)	중소기업만 50% 감면 (‘15.12.31까지)	공제율 50%→70% 확대 일몰연장	중견기업까지 확대
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(조특법 § 30의4)	중소기업만 50~100% 공제 (‘15.12.31까지)	일몰연장	중견기업까지 확대
장기재직 유도세제 (조특법 신설·개정)	신설·개정	중소·벤처만 지원 *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, 우리사주인출시 소득세 면제 등	중견기업 장기재직 유도세제 신설
신성장·원천기술 R&D세액공제 (조특법 § 10 ①)	중소 30% 일반 20% (15.12.31까지)	일몰연장	중소 30%, 중견 25%, 일반 20%
일감떼어주기 과세 (상증법 신설)	신설	단, 중소기업은 제외	중소·중견 제외
일감몰아주기 과세 (상증법 § 45의3)	정상거래비율 30% (중소·중견 50%) 초과시 과세	-	중소·중견 제외
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(법인세법 신설)	신설	단, 중소기업은 제외	중소·중견 제외
기업소득환류세제 (법인세법 § 56)	중견·대기업 과세기준을 동일	-	중견·대기업 과세기준을 차등
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§ 24)	중소 7%, 중견 5%, 대기업 3%	공제율 축소 중소 6%, 중견 3%, 대기업 1% *기 투자 진행 부분 기존 공제율 적용	현행유지
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 (소득세법 § 12)	중소·벤처기업 연구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(월20만원 이내)	-	중견기업까지 확대